

〈書評〉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y Barrington Moor, Jr. 578 pp.
Boston: Beacon \$ 10.00 1966.

觀念的 解釋法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憲法學의 關心範圍를 넓히려는 뜻으로 憲政秩序의 近代化 過程을 包含하는 近代의 比較社會史的 研究인 이 冊을 紹介한다.

우리 憲法學의 一般의 傾向이 經驗的(empirical) 觀察과 理論化로부터 거의 絶望的으로 遊離되어 推象의 形而上學的 冥想에서 비롯하여 語戲로 끝나고 마는 것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 理由에 基因하는 것 같다. 첫째로 今世紀初 「유물」을 風靡하던 Staatslehre의 影響이다. 그것은 Bluntschli에 의하면 “國家에 관한 學問, 即 國家의 諸條件과 本質, 그것의 諸形式 樣態, 혹은 發展을 理解하는 科學”(1)이다. 萬物은 모두 어떤 “狀態”에 있는 것으로 憲法은 “政治的 統一과 秩序”로서의 國家의 “全體의 狀態”를 의미한다.(2) 이러한 non-operational한(3) 循環論的 定義와 用語에 基礎한 理論的으로 自己閉鎖的인 記述은 하나의 經驗的 實證을 위한 假說, 命題로서가 아니라 普遍妥當하는 一般의 原理로서 主張된다.(4) 그 內容은 대체로 模糊한 規範的表現(normatively ambiguous statement)으로서(5) “例컨대 이것이 法이다”라는 말을 分析해 보면 (1) 法的決定을 내릴수있는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者(權威者)들에 의한 과거의 表現의 總和, (2) 未來의 事件에 관한 權威者의 決定에 관한 豫測 (3) 또는 發說者 自身の 當爲論 등일 수도 있다. 그 規範的表現들은 一定한 論理的 體系內의 諸命題의 內的關

- (1) J.K. Bluntschli, *Staatslehre* (1921), 1. 그 “國家의 本質的인 本質”이 “男性的性格(maskuline Persönlichkeit)”이고 보면, 그것은 거의 「카리카츄어」에 이르는 것이다.
- (2)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1928), 3.
- (3) 물론 定義와 概念은 社會過程의 體系의 觀察과 解釋을 위한 道具로서만 價値가 있는 것이며, 科學的研究 그 自體를 代置할수는 없다.
- (4) 社會文化現象에 관한 假說의 “經驗的日次(empirical index)”가 自然現象에 관한 그것보다 더 不安하다는것은 數符을 요하지 않는다.
- (5) 主張하는 內容이 “法”이므로 「規範的」이다. 그문제의 規範이 主觀的인 것인지, 다른사람들도 그것을 法規範으로 받아드리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法規範으로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自身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인지 分明치 않다. “normatively ambiguous statement”는 法이외에도 例컨대, “正義, 倫理, 神의 攝理, 國是”등에 頻繁히 動員되며 行爲者의 要求와 期待를 重大化 시키는 效果를 노린다. “이것이 法이다” “이것이 神의 뜻이다”云云의 말을 援用하므로써 그 發說者는 主張內容에 관한 自身の 趣向 혹은 意態를 감추고 그 自身을 超越하는 者의 規範으로서 說破하여 그가 말하는 것의 注意도를 增加시킨다. 더 詳細히는 Harold D. Lasswell & Myres S. McDougal, “Legal Education and Public Policy,” 52 *Yale L.J.* 266-7 (1943).

係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一貫性, 一般性 또는 特殊性이 문제된다. 따라서 法은 神學과 같이 “우리 文明에 있어서 高度로 發達된 構文의 體系(syntactical system)인 것이다.”⁽⁶⁾ 憲法學이 그 範圍와 方法論(scope and method)을 이에 限定할때 Pareto의 諷刺를 빌리면 “文學의 한 分野”⁽⁷⁾에 그칠수 밖에 없다. 둘째로 憲法判例, 先決例와 爭訟이 極少數이기 때문에 實定的인 憲法理論의 發展이 至難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政治過程에서 내려지는 憲法的決定이 極少數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既存하는 frame of reference로서는 그러한 決定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捕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成文憲法の 繼受성에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른바 “發展하는 國家”들의 共通된 現象이다. 形式的政府構造의 流動性과 政府 機能遂行的 憲法, 기타 法的規範으로 부터의 乖離 때문에 比較政府論은 自然히 政府構造와 그 形式的權力的 分析보다도 政治的機能分析에 重點을 두게 된다.⁽⁸⁾ 짧은 憲政史를 통하여 이러한 成文憲法과 政治行態의 乖離를 痛感하면서 도 우리 “憲法學”은 「파노라마」와 같이 轉變하는 政治事象을 獨逸 Staatslehre 亞流의 “學說”을 借用하여 事後美化하거나⁽⁹⁾ Karl Loewenstein 類의 政府形態論을 소개하는데 그칠수 밖에 없었다.⁽¹⁰⁾ 그의 이른바 “存在論的接近”이 憲法規定의 內容分析에 滿足하지 않고 “現實的 權力過程”의 研究를 強調하는것은 發展의 方向定位과 하겠으나⁽¹¹⁾ 現代 比較憲法學의 課題는 “權力過程의 現實과 憲法規範의 一致”⁽¹²⁾ 與否, 혹은 그 程度를 記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實的 政治過程과 憲法規範의 相互作用을 包含하는 하나의 政體(body polite)의 憲法的 政治過程(constitutive process of authoritative decisions)의 分析, 記述, 그 社會過程과의 相互作用의 考察을 위한 科學的體系를 만드는데 있다. 規範文學的 “憲法學”은 憲法的 科學과 憲法的技術(正當化的 技巧), 實定的 憲法政策과 憲法的形而上學을 混同하며 社會政治的 「질문」로서의 憲法과 社會政治的 「事實」로서의 憲法를 區別못한다. 그 憲法的 技巧마저 憲法的

(6) *Ibid.*

(7) 이것은 Staatslehre의 隣接學問인 Political Economy에 관한 것이었다.

(8) Gabriel A. Almond & James 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52, (Princeton, 1960).

(9) 例컨대 「4·19」나 「5·16」을 前後한 政治現象의 解釋, 韓泰淵, 憲法, 44-82.

(10) Karl,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Chicago: 1957), 獨譯版, *Verfassungsgeschichte* (1959). 韓泰淵, 前掲書, 29, 30. 文鴻柱, 韓國憲法, 59-60. 특히 그의 이른바 “存在論的 憲法分類法(ontological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s)”이 一部國內學者들을 感動시킨것 같다. Loewenstein, *Id.*, 147-153. 그러나 이 分類法은 1950年代의 諸政府形態를 著者自身の 價値觀에 따라 歐美諸國(normative), “後進國家”(nominal), 社會主義國家(semantic)로 靜的, 形式的으로 把握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存在論的” 分類法이 憲法이라는 政治的象徵의 function에 留意한것이라면 憲法的 機能은 “規範的”, “教育的(名目的)”, “語義的”인것이 限定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憲法的 「질문」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政治過程에서 이 세가지 機能을 遂行한다.

(11) *Id.*, 147-8.

(12) *Ibid.*

紛爭, 爭訟의 不毛로 生動하는 것이 못되고 講議나 公務員資格·採用試驗에만 所用되는 것으로 轉落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憲法學의 學問으로서의 運命은 Montesquieu 以來의 政府機關과 敎說에 基礎한 傳統의 接近을 넘어서 憲法의 政治過程을 經驗的으로 體系化할 수 있는 機能의 接近(functional approach)의 可能性 如何에 달려있다. (13)(14)

지금 人類社會는 諸文化의 激突, 帝國의 文明의 擴散, 科學과 技術의 「탄젠트」線的 發達, 수많은 世 國家群의 出現, 우리들 時代에 가장 “感動的”인 두개의 自同化의 「심물」—“民族”과 “階級”—의 地政的 一致로 그 變化는 加速度化하고 있다. 이 社會變化過程에 人間이 意志의 合理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經驗科學을 基礎로한 政策決定體制의 效率인 發展運用에 의하여서만 可能하다. 따라서 憲法學은 “憲法”을 固定된 規範體(body of norms)로서 接近하는 것을 止揚하고, 끊임없는 憲法的規範의 立案, 推進, 制定, 援用, 適用, 再評價, 廢棄의 連續的 「흐름」인 憲法의 政策決定過程으로 把握하고, 더 나아가 諸隣接社會科學과의 協助에 의하여 憲政過程의 效率의 運用과 그 制度의 發展에 寄與해야 할 것이다.

(13) Vienna 法學派의 功獻은 Montesquieu의 分類를 社會的 「機關(organ)」으로서가 아니라 社會的 「機能(function)」으로서 把握하여, 形式的 憲法上의 名稱에 拘束되지 않고 政府構造안 的 受權된 個人이나 集團이 어떠한 機能을 遂行하는가를 經驗的으로 考察한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의 接近은 그 範圍를 古典的인 政府機關에 限定한 데서 다음과 같은 缺點을 避할 수 없었다. 첫째로, 그 “制限的機能主義”는 形式的政府機關만이 法的決定을 獨占한다는 前提아래서만 實效의 일 수 있다. 둘째로, 形式的政府의 立法, 行政, 司法 세 機關에 相應하는 세가지 機能밖에 演繹할 수 없었다. “公法”敎科書에서 發見되는 “實質的意味의 立法”이니 “形式的意味의 司法”이니 하는 用語는 Vienna 法學派의 遺物이다.

(14) 「社會過程(social process)」은 「人間(行爲者, 參加者)」가 「制度」를 통하여 「環境·資源」에 影響을 주면서 여러 저려한 「價値」를 形成, 分配하는 모든 相互作用, 影響(interactions)의 흐름이다. 「政治過程」은 이러한 社會過程의 一面으로 政策決定過程에 參與하는 「權力」의 形成, 分配過程이다. 「政策(Policy)」은 目標價値와 그 實現에 관한 「프로그램」이며 「決定」은 嚴重한 制裁(severe sanction)을 包含하는 政策이다. 政策決定過程은 政策의 樹立뿐만 아니라 그 宣布, 援用, 適用, 再評價 廢棄 등의 全過程을 指稱한다. 이 定義에 관하여 더 詳細히는 Harold D. Lasswell &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69-80 (1950, New Haven) 參照. 이러한 現實的 政治過程은 첫째로 “赤裸의 暴力(naked power)”에 의하여 取하여진 決定과 둘째로 社會構成員의 權威意識(perspectives of authority)과 一致하게 取하여진 決定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後者를 “權威的 政策決定過程(authoritative decision process)”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政策이 社會의 權威意識에 相應하여 樹立된 基準에 따라 政策決定者에 의하여 立案, 宣布, 執行되는 過程을 의미한다. 憲政的 過程 또는 “權威的 構成過程(constitutive process of authoritative decision)”은 政策決定을 위한 根本的인 制度의 構成과 不可缺의 諸機能을 分配하는 權威的 政策決定過程이다. 憲政過程의 經驗的 記述을 위하여서는 諸事象을 指稱할 수 있는 包括的인 概念目錄이 必要하다. 그것이 없으면 研究結果는 一貫性을 喪失하며 比較考察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機能의 研究을 위하여 實用的인 概念들을 規定하는 하나의 方法은 不斷한 社會的 相互作用의 흐름이 “高潮”에 이르는 結果的事象 一例인 戰爭, 休戰, 投票, 票決, 判決 등을 捕捉하여 그것을 始發點으로 하여 記述的(descriptive) 概念體系를 構成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相互作用行爲의 흐름이 高潮點에 이르는 前後過程의 重要한 局面을 다음과 같이 分析할 수 있다.

1. 누가 어떤 程度의 役割을 하면서 政策決定에 參與하였는가? (參加者 Participants).
2. 參加者들의 重要한 自己同化의 對象, 要求, 期待는 무엇이 있는가? (目的, Perspectives).
3. 어떠한 狀況, 어떠한 條件아래서 參加者들이 相互作用하는가? (狀況, Situations).
4. 各者는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어떠한 手段들을 가지고 있는가? (基礎價値, Base

우리社會는 急激한 變化過程을 지나고 있으며 그 憲政秩序의 “近代化”에 있어서 가장 深刻한 關心은 民主主義와 自由의 問題이다. 過去의 觀念的解釋憲法學이 그것의 解決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오늘 現在存在하는 憲政組織의 基底를 이루는 社會變化的 比較研究에 關心을 돌려보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다.

Harvard의 社會學者 Barrington Moore, Jr.의 “獨裁와 民主主義의 社會的根源：近代化에 있어서의 地主와 農民”의 關心範圍는 그 題目이 示唆하는 것 보다 훨씬 넓다. 그는 첫째로 지난 3世紀에 걸친 諸社會의 歷史過程에서 土地를 所有하는 elite와 農民 두 社會集團의 役割을 分析하고 둘째로 英, 佛, 美, (「프러시아」, 「러시아」에 관하여도 充分히 考察) 및 中國, 日本, 印度의 近代史를 그의 獨特한 比較的方法論을 使用하여 어떠한 要因들이 專制的 혹은 民主的政治組織을 結果하는가를 問題로 設定하였다. 물론 社會全體의 變化를 研究하지 않고 地主와 農民의 相互作用, 그 現代社會를 形成하는 過程에서의 役割을 適切히 取扱할 수는 없다. 上流「부르조아지」(haute bourgeoisie)없는 近代 社會史는 그 「텐마크」의 王子 없는 Hamlet과 같이 의미없는 것이다. 따라서 產業的 金融 elite와 農業的 elite(地主)의 相互作用, 關係에 관한 研究가 이 冊의 相當한 部分을 차지 한다. 產業的 elite의 役割이 始

Value).

5. 어떠한 方法으로 이러한 手段이나 基礎價値가 操作되는가? (戰略, Strategies).

6. 무엇이 相互作用過程의 短期的, 直接的 結果—即 參加者間의 價値分配狀態의 變化—인가? (結果, Outcome).

7. 比較的長期的인 餘派—效果는 무엇인가? (效果, Effects). Lasswell은 政策決定의 諸段階를 다음 五個까지 機能作用으로 分析한다. H.D. Lasswell, *The Decision Process*, “Seven Categories of Functional Analysis,” 2 (College Park, Md: 1956).

1. 情報(Intelligence)—收集, 分析·豫測, 計劃, 普及.
2. 推進(Promotion or Recommendation)—政策의 主張, 宣傳.
3. 立法(Prescription)—政策의 “立法”化.
4. 援用(Invocation)—具體的인 事件을 法律에 따라 暫定的으로 特徵지우는 것.
5. 適用(Application)—最終的으로 特徵지우는 것.
6. 評價(Appraisal)—政策의 成功·失敗與否의 檢討.
7. 終了(Termination)—法律의 廢棄 및 그 法律의 執行을 위한 諸人的 物的 施設의 整理.

Gabriel A. Almond와 James S. Coleman은 위의 概念들이 比較法學的考慮에서 導出된 缺點을 批判하고 政治組織의 機能을 社會(society)와 政體(polity)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Almond & Coleman (ed.),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op. cit., 12—17.

A. 流入機能(Input functions)—

1. 政治的社會化 및 募集, 養成(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cruitment).
2. 利益表明(Interest articulation).
3. 利益 調整·總和(Interest aggregation).
4. 政治的 意思傳達(Political communication).

B. 流出機能(Output functions)—

5. 法規制定(Rule-making).
6. 法規適用(Rule-application).
7. 司法(Rule-adjuccation).

그러나 이 概念들은 政府能機인 output function에 관한 限 앞에서 指摘한 Vienna學派의 “制限的機能主義”의 缺點을 避할 수가 없다.

初에 設定한 制限된 問題解決에도 關鍵的이라는 事實을 知悉하는 著者は 單刀直入의으로 「부르조아」 없이 民主主義 없다. (no bourgeois, no democracy)⁽¹⁵⁾라고 宣稱하기에 이른다. 또한 그 力動的 社會過程에 參與하는 社會集團이 地主, 農民, 「부르조아」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革命過程에서의 小市民階級(sans-culottes),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中國에서 發見되는 農業的 官僚集團도 無視할 수 없다. 따라서 著者は 모든 社會構造의 現實的 活動 狀을 分析하게 되었으며 農民과 地主의 役割에 관한 強調은 減少되고 있다.⁽¹⁶⁾

그가 提起하고 있는 問題도 그 題目이 表示하는 것보다 廣範圍한 것이며 “專制냐 혹은 民主主義냐” 式의 問題設定은 適切한 것이 못된다. 특히 著者は 그가 研究對象으로 삼은 諸社會를 形式的, 制度的, 法的基準에 따라 分類한다. 그의 이러한 方法論은 40年前 Oxford 나 Harvard의 憲政史學派의 影響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앵글로-색슨」의 社會制度를 政治的 衡平과 知慧의 精華로 看做하고, 憲政의 形式的 法規를 綿密히 分析 함으로서, 即 그 法規들의 「앵글로-색슨」原型에의 名目的 類似 程度에 따라서 한 社會에 있어서의 自由와 民主主義의 程度가 實證될 수 있다고 推定했다. 오늘날 그 「앵글로-색슨」의 “民主的” 法規와 制度의 輸出事業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破產하고 말았으며, 人間의 自由는 多面的인 것이어서 「마그나·칼타」, 權利章典, 혹은 代議的 議會 制度에 具現된 것이 그 全部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問題되는 것은 形式的 法規보다도 그것을 支配하는 社會, 性格, 階級, 文化, 危機의 程度 등의 諸要因이다. 酋長이나 長老의 支配 아래 있는 部族社會가 實際적으로 民主의 일수도 있으며, 그 目的에 관하여 意見合致가 없는 國家社會의 民主的 諸機構는 어떠한 狀況 아래서도 稼動할 수 없다.

그의 “專制” 혹은 “民主主義” 등의 用語를 좀더 人類 社會學的으로 理解한다고 하더라도 著者が 1950年代 初期에 提起하기 始作한 이 問題가⁽¹⁷⁾ 1960年代 後期에 이르러 다르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獨逸, 「이태리」, 日本, 中國, 蘇聯과 같은 20世紀의 巨大한 近代化, 産業化하는 諸社會들이—英國, 美國, 「프랑스」의 “民主的”過程과는 對照的으로—에 “專制的”인 길을 擇하였는 가의 疑問은 Hitler의 火葬木의 煙氣가 아직도 湮滅하지 않았고 Stalin의 清教徒的 社會主義가 地球上 가장 廣漠한 國家社會를 支配했으며, George Orwell

(15) p. 418. 이 點에 관하여 興味있는 것은 우리나라 知識人의 相當數가 “近代化”를 “中産階級의 成長과 그 擴張”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Sung Chick Hong, *The Intellectual and Modernization: A Study of Korean Attitudes*, 40-41 (Seoul: 1967).

(16) 著者は “農民”(Peasantry)을 土地를 所有하는 上流階級에의 封建的 隸屬의 歷史를 가지고 土地를 事實」: 占有하며 特有한 文化的 態樣을 가진 社會的集團으로 定義한다. (p. 111.) 그러나 美國社會에는 이러한 의미의 農民은 存在하지 않았으며 다만 類似한 社會集團으로는 南北戰爭後 南方에 이르는 南部黑人 小作農(share cropper)이 發見된다. 著者が 그들을 他社會의 農民과 같이 取扱하는 것은 假說의 一般化를 위한 無理이다.

(17) Moore, *The Dilemma of Power, Terror and Progress of Soviet Politics*. (Cambridge); *Political Power and Serial Theory* (Cambridge).

이 “1984” 쓸때에 西歐文明圈의 가장 深刻한 問題로 보였다. 오늘날, 人間의 自由에 관한 關心이 50年代보다 더 減少되어서가 아니라, 諸憲法의 形式들이 皮相의이며 暫定的이라는 것을 知悉하기 때문에 專制 對 民主主義의 問題는 甚 社會史的 觀點에서 볼때 前과 같이 가장 根本的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Fascism 이나 Stalinism 은 뿌리깊은 恒久的 構造的 現象이기 보다는 短期的 過渡期같이 보인다. 前 Fascist 國家인 西獨, 「이태리」, 日本의 民主主義는 輕視할 것이 못되며, 蘇聯이나 東歐社會主義國家의 個人의 自由의 制限은 緩和되고,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輿論과 壓力 團體의 役割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한편 歐美 古典의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도 끊임없는 새로운 挑戰아래 놓여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는 家父長的 後見아래 있으며, 英國의 경우 個人의 自由의 保障은 世界的이라 할수있으나 代議制度의 政治的 役割과 權威는 急激히 斜傾하고 있으며 權力의 民主的統制는 5年마다 “惡漢”을 몰아내는 힘으로 되고 말았다. 美國의 民主的 政治過程이 오늘날 普遍國家(universal state)의 「아메리카」文明에 宿命的인 兩 問題— 支配階級の 「아메리카」를 世界警察로 만드려는 慾望⁽¹⁸⁾과 그와 關聯된 「니그로」少數人種과 都市問題—를 어떻게 겪어 나갈 것인가를 豫測할 수 없다.

이러한 各社會에 있어서의 自由와 民主主義의 程度가 短期的으로 振動한다는 經驗에 비추어 볼때, 著者が 提起하고 있는 問題가 重要한 것인가 疑問된다. 著者の 設問을 좀더 科學的으로 表現하면, 어떠한 狀況아래서 한 社會가 近代化過程에서 比較的 短期間의 專制的 段階를 거칠 可能性이 큰가, 혹은 거처야만 하는가의 問題이다. 물론 이것은 특히 그 比較的 短期間에 全生涯의 週기가 걸친 祭物들에게 重要한 問題이지만 그 期間이 産業化의 決定的 段階 以上 延長되지 않는다는 假說을 받아 드린다면 甚 比較社會史學의 가장 決定的인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행히, 著者は 이보다도 더 興味있고 根本的인 相互關聯된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첫째로 英國, 「프랑스」, 「러시아」, 中國의 大革命의 社會的 根源과 그 結果는 무엇인가? 특히 地主와 農民은 그 社會革命過程에서 어떠한 役割을 해왔는가? 둘째로 近代化, 産業化, 都市화된 社會를 形成하는 데 必要한 諸前提條件은 무엇이며, 그와같은 發展을 위하여 農業地域에는 어떠한 變化가 必要한가? 그리고 그와 같은 社會變化過程을 위하여 所要되는 社會的 代價는 무엇인가?

이 問題에 대한 解答으로 著者は 前工業的 社會로 부터 工業化, 近代화된 社會에 이르는

(18) “普遍國家는 文明의 分解前이 아니라 그 後에 出現하며 그것은 盛夏가 아니라 目下의 가을을 粉裝하며 嚴冬을 豫告하는 「인미언의 여름」이다”. Arnold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 7, *Universal States*, 3. “徐徐히 그러나 宿命的으로 「아메리카」는 過去의 偉大한 國家社會를 傷害하고 弱화시키고 때로는 滅亡케 했던 權力의 傲慢의 徵表를 보이고 있다”. J. William Fulbright, *The Arrogance, of Power*, 22 (Random House, 1966).

세계의 代表的인 過程을 提示한다. (1)成功的 「부르조아」革命을 通하여 農村을 商業化, 近代化하고 貴族地主와 農民을 資本主義的 近代經濟와 民主的政體에 同化하는 것(英, 美, 佛), (2)「부르조아」革命의 失敗 또는 不在로 인하여 貴族地主와 資本家の 同盟에 基礎한 Fascist 獨裁에 의하여 資本主義經濟體制를 이룩하는 것(獨逸, 日本). (3)都市中產階級の 力量이 (2)의 境遇같은 地主—資本家の 同盟關係도 形成하지 못할 程度로 脆弱한 社會의 近代化過程에서 (「러시아」, 中國) 人口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疎外된 農民階級이 破壞의 革命勢力으로 登場하여 地主階層을 破壞하고 共產主義獨裁아래 產業化가 進行되는 것.

著者は 오늘날 比較的 開放된 民主社會—(1)의 過程을 거친 社會—의 形成過程에서 “暴力의 時代”가 結果的인 政治的自由와 經濟的發展을 위하여 不可避한것으로 보고있다. 英國의 경우 그 暴力의 時代는 첫째로 1646年의 內戰, Charles一世의 處刑과 그 象徵的인 國家權限의 縮少, 둘째로 18世紀의 “封鎖”政策(enclosure)에 의한 農民階級の 破壞로 나타난다. 모든 歷史的으로 重要한 暴力이 革命의 形態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實際로 相當數가 法治的 憲政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行使된다. 英國의 “enclosures”가 바로 그 例로서 그것은 殘忍한 것이 있으나 歷史的으로 不可避한 過程이었다. 그 過程에서 地主階級은 農業을 企業化하였으며, 潛在的 反動階層인 小自作農은 자취를 감추어 미래의 民主社會에의 길이 트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著者의 見解에 의하면 英國의 特殊한 政治的進化過程은 다음 네 要因에 달려있다. (1)貴族的慾望을 가진 強力한 「부르조아지」가 일찌기 富와 權力을 獲得했고 (2)주로 毛織物 輸出 利益 때문에 土地를 所有한 貴族階級の 土地所有權에 대한 觀念이 일찌기 封建的인 것에서 商業的인 것으로 轉移했으며 (3)이러한 「부르조아지」와 商業化한 地主階級の 聯盟이 王에 의하여 代表되는 國家로 부터 獨立하여, 더 나아가 國家에 내하여 敵對的으로 形成되었고 (4) 18世紀에 이르러 農民階級이 小作農(農業勞動者)化 함으로서 破壞되었다는 事實등이 그것이다.

著者의 이러한 英國近代社會變化史의 理解의 難點은 英國社會, 특히 農業社會의 競爭的, 個人的, 商業的價値體系에로의 轉移 程度를 誇張하는데 있다.⁽¹⁹⁾ 實際로는 19世紀 後期까지 小作農階級은 그 上流階層에 傳統的으로 忍從하였으며 地主들도 그들의 下流階層에 대하여 家父長의態度를 堅持해 왔다. 著者는 「變化」를 強調하는 나머지 既存하는 諸要因—특히 傳統的 「이네오르키」의 그 變化에의 影響을 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에 地主階級の 商業化와 中小自作農의 衰滅速度와 程度를 非科學的으로 誇張하고 있다. 오히려 英國의 農民階級은 比較的 忍從的이어서 다른 社會에서 보는 週期的 農民反亂은 1549年 以後 英國史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아마도 著者가 英國의 近代化過程에서 再強調하는 重要點中에서 注意를 기

(19) 이러한 誤謬는 E.J.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과 같은 名著로 부터 C.B. McPherson의 近刊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s*에 이르기 까지 共通된듯하다.

우려할 점은地主와 「부르조아」의 聯盟이 國家(既存政治秩序)와 協同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에 敵對하여 發展했다는 事實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著者は 왜 英國과는 相異한 社會的背境으로 부터 英國의 그것과 類似한 政治制度가 出現하였는가를 說明하려고 한다. 18世紀 「프랑스」의 貴族은 土地로부터의 利潤을 領主稅(seigniorial dues)의 形式으로 收穫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農村社會의 商業化는 오히려 封建制度를 強化했다. 國家가 「부르조아」와 貴族으로 構成된 老練한 農業的官僚制度를 運用하고 있었고, 그것은 傳統的所有關係, 特權, 依存關係를 더욱 強化했다. 따라서 多數의 「부르조아지」는 그 世襲的特權과 官職의 保護를 위한 國家에의 依存關係로 貴族과 聯結되었고 封建化하였다. 結果적으로 「프랑스」革命은 相當한 反資本主義的要素인 小市民階級(sans-culottes)과 農民을 包含하게 되었다. 따라서 革命의 週期的 左旋回는 그 田園的農民階級과 sans-culottes의 利益이 物價統制를 둘러싸고 衝突, 分離될 때까지 繼續되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革命의 終焉인 것이다. 革命의 結果는 相異한 諸社會的集團을 위한 勝利였으며 그중에서 특히 產業, 商業「부르조아지」가 革命後 登場한 形式的機會均等과 私有財產制度에 基礎한 政治, 法秩序의 惠澤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長期的인 革命의 効果이고 短期的으로 보면 身分的特權의 廢棄와 中小自作農의 鞏固化를 結果하였다. 그 貴族階級の 破壞는 著者의 見解에 의하면 「프랑스」에 있어서의 軍部의 支持를 받는 金融資本家와 土地를 所有하는 貴族階級の 聯盟을 不可能하게 했고 따라서 「프랑스」를 「프러시아」나 日本이 겪은 Fascist 段階로 부터 救濟한 것이다. 自作農階層의 強化는 그들의 市民權 獲得에 의한 「이데오르키」的 願望의 滿足과 土地所有權 獲得으로 인한 物質的慾望의 實現으로 그들은 「프랑스」政治風土의 確固한 保守勢力으로 登場하여 오늘날 까지 現代化를 牽制하고 있다.

歐美 세계의 社會中에서 著者의 分析이 가장 微微한 것이 美國이다. 著者에 의하면 그 開放的 民主社會를 形成하는 過程에서 不可避한 “暴力”은 美國의 경우 南北戰爭(Civil War)에서 나타난다. 著者는 古典的인 Charles Beard의 經濟的決定論을 버리고 南部의 大農經濟가 결코 北部의 工業的利益을 威脅하지 않았다는 現代修正理論을 받아들인다. 著者가 南北戰爭의 原因으로 보고 있는 것은 뿌리깊은 文化的價値觀의 激突이다. 南部는 反都市的, 貴族的, 「엔리프」的, 位階的이며, 一 奴隸勞動力에 基礎한 大農場은 극히 資本主義的 企業經營方式에 의하여 運營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一反產業的이었다. 北部의 產業資本家들은 聯邦을 하나의 統一된 市場으로 保存하기를 원했으며 聯邦政府의 權威가 奴隸制의 維持를 위하여 利用되는 것을 制止하려 했다. 또한 西部의 自由農들은 奴隸制度의 擴張을 그들의 利益과 價値觀에 대한 威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妥協할 수 없을 程度로 뿌리깊은 文化的價値의 相反을 둘러싸고 北部 產業資本家와 西部自由農의 南部大農에 對한 同盟이 成立했던 것이다.

그 內戰이외에 可能했던 다른 歷史的 過程은 著者에 의하면 北部産業資本家와 南部大農의 反動的聯盟으로서 勞動者, 奴隸, 自由農에 對한 彈壓으로 登場할 수 있었다. 만약 戰爭이 回避되었더라면 그 反動的同盟은 “再建運動(Reconstruction)”의 失敗後인 1880年代가 아니라 1850年代에 登場했을 것이며 오늘 「아메리카」가 그토록 自慢하여 마지않는 政治的平等과 民主主義에로의 發展은 遲遲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他社會를 分析하던 冷徹한 客觀的態度는 사라지고 著者는 感傷的, 道德的 語調를 高揚하면서 感動的인 Pericles의 吊詞와 Lincoln의 Gettysburg 演說의 讚詞로서 이 章을 끝맺는다. 그의 「아메리카」文明과 社會에 관한 樂觀的인 結論은 希望的인 見解로서 그 文明의 Toynbee의 이른바 “普遍國家性,”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繼續되는 黑人的 差別, 南部的 復古風의 文化와 價值觀, 世界既存秩序의 保守者로서의 役割등이 著者의 樂觀論을 相殺하고 있다.

著者의 一般化된 假設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近代化의 進行을 위하여서는 農業을 主經濟行爲로 하는 經濟構造를 止揚해야한다. 그것은 地主「엘리트」의 政治的 「헤게모니」의 破壞와 農民의 市場生産을 위한 商業化 또는 集團화된 農場의 農業勞動者化를 包含한다. 이 傳統的인 두 社會的 集團이 成功的으로 歷史的舞臺로부터 退場하지 않으면 두가지의 毒害한 「이데오르키」가 簇出한다. 그 하나는 貴族病인 道樂主義(Amateurism)다. 그것은 非科學的인 問題에 관한 均衡된 判斷, 文化와 藝術에의 熱中에 이르나, 우리가 知悉하는 英國의 경우와 같이 美學的 貴族崇拜, 教育의 停滯, 無能한 安逸, 反知性主義를 結果한다. 또 하나는 農民病인 「카토니즘」(Catonism)이다. 그것은 罪 많은 都市와 「사탄」의 巨大한 맷돌과 같은 工業文明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머니인 大自然에 사는 田園生活의 有機的美와 調和를 復古的으로 理想化한다. 「카토니즘」은 衰退하는 地主—農民社會를 固守하려는 後方警備運動으로, 곧 愛國主義, 戰爭, 戰場에서의 죽음의 讚歌로 淋漓하는 것이다. 그것은 極烈히 反知性的인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를 포함하는 모든 近代社會에로의 趨勢를 反對한다. 著者의 見解에 의하면 農業社會의 轉換은 必需的이며 이를 위한 地主, 農民階級の 除去는 暴力을 隨伴해왔다. (1) 「부르조아지」가 脆弱하고 反動的 貴族階級이 君臨하는 社會는 共產主義的 過程을 거칠 可能性이 크며, 그것은 地主階級, 土地所有制, 農業官僚集團을 破壞하기 위한 極大限의 物理力을 動員한다. (2) Fascist 態樣은 地主와 産業資本家들이 그들의 利益을 위한 近代化를 위하여 結合하여 社會的下層의 代價위에 國家權力을 驅使하여 強行할 때 出現할 可能性이 크다. (3) 民主的인 過程은 緩慢한 政治的 進化, 農民階級の 徐徐한 衰退와 商業的 價值觀을 갖는 貴族地主와 「부르조아」의 國家權力과의 對置關係등 特有的 諸條件이 充足될 때 出現할 可能性이 크다.

끝으로 近來에 보기도픈 이 傑作에서 그 研究內容과 그러한 結論에 이르는 方法論—물론 兩者는 不可分의 것이지만—에 관하여 評者의 疑問點을 提示한다.

著者が近代의 成功的 社會革命勢力이 教條的 Marxist 들의 理論과는 달리 疎外된 農民階級이었음에 着眼한 것은 좋으나 그가 理解하는바와 같이 모든 社會革命 勢力에서 勞動階層을 輕視하는 것은 歷史的 事實과 맞지 않는다.⁽²⁰⁾ 또한 著者の 發展類型이 앞에서 指適한바와 같이 古風의 英美憲政主義的 定義에 立脚한 自由, 民主主義등에 基礎하기 때문에 그 類型에 基底하는 經濟, 社會的諸要因의 分析에도 不拘하고 時的要素가 輕視된다. 著者の 憲政的 形式에 立脚한 發展類型을 註에서 소개하는 Charles E. Black의 發展段階와 對照해보면 興味있을 것이다.⁽²¹⁾ 또한 이러한 時的要素의 輕視로 著者が 強調하여 마지 않는 地主階級과 產業資本家의 聯盟의 timing의 重要性을 노치고 말았다. 좀더 一般的인 問題로서 우리의 關心事가 되는—만약 우리가 西洋文明이 東洋文明이나 「이스람」 혹은 「힌두」文明보다 “發展”된 段階라는 短期的 比較 文明史觀을 받아들인다면⁽²²⁾—그 社會發展의 時差의 社會的 根源은 무엇인가에 대한 著者の 野心的인 說明은 既存解釋을 넘지 못한다. Otto Hintze는 그의 封建社會秩序(Stände)의 研究過程에서⁽²³⁾ “前近代的” 西歐社會에서 發見할 수 있는 結果的 民主的 發展의 要因으로서 그 社會의 特定集團 또는 個人에 대한 統治者의 權力으로 부터의 免除特權(Immunität) 概念의 成長과 不義의 權威에 대한 抵抗權(Widerstandsrecht) 概念의 發達, 封建的 封臣關係에서 由來하는 自由契約의 概念등을 들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社會的 根源이 왜 다른 社會에는 存在하지 않았나? 著者は Karl Wittfogel의 灌溉的 決定論에 立脚한 이른바 “東洋的 專制”(oriental despotism)論⁽²⁴⁾의 一元性을 批判하나 非商工業的 社會에 있어서의 政府가 그 社會의 關鍵的 課業에 관한 政府의 觀念을 大衆에게 용이하게 受容시킬 수 있으며 그 關鍵的 課業遂行의 態樣의 重要性을 指摘하는데 그친다.

著者の 一般化된 假說들을 그의 그러한 結論에 到達하는 科學的 作業過程—方法論으로 부

- (20) 例컨대 失敗한 1848年의 Paris 革命(Hobsbawm, *id.*, 349—362; 目擊者의 記述로는 Alexander Herzen, *Vom Andern Ufer* 參照.)이나 1870年의 Paris Commune (이에 관한 古典 Karl Marx, *The Civil War in France* 는 그의 「이데오르키」의 偏見이 흠이다.)에서 勞動階層의 役割이 決定的 이었고 「러시아」革命을 單純히 農民革命으로 把握하는 것은 歷史的 事實과 맞지 않는다. E.H. Carr, *A History of Soviet Russia: the Bolshevik Revolution*, Vol. 1, 70—123, Leon Trosky,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Vol. III, 198—272 參照.
- (21) Black은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New York: 1966)에서 近代化의 다음 4段階를 分析「모델」로 設定했다. (1) 傳統的 社會에의 技術, 經濟, 政治等 새로운 現實로서의 近代性의 挑戰, (2) 近代化를 위한 政治的 權力의 移轉, 「리더쉽」의 確立. (3) 그 新民族國家社會內의 高度의 工業化, 都市化, 教育의 普及, 福祉 및 社會·經濟的 轉換 (4) 그 民族國家內의 相異한 諸階級과 地域의 政治, 社會的 統合과 그文化와 政治權力의 對外的 擴散 統合. Black에 의하면 이러한 各段階는 暴力, 戰爭, 革命에 이룰수도 있는 深刻한 危機를 內包한다.
- (22) 그러한 史觀의 批判에 관하여는 Oswald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Helmut Werner ed.), 12—30.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 I, *Introduction*, 1—50 參照.
- (23) Hintze, *Staat und Verfassung*, I, “Weltgeschitliche Bedingungen der Repräsentativverfassung(1931),” 140—185; “Typologie der ständischen Verfassung des Abendlandes (1930),” 120—139.
- (24)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1937).

더 遊離하면 大衆化된 「도그마」가 되고 말 것이다.⁽²⁵⁾ 그는 過去에 統計資料가 歷史的事實을 歪曲, 模糊하게 하기 위하여 保守的宣傳員들에 의하여 誤用, 惡用되었음을 批判하고 “保守的 修史學과 統計”를 諷刺한다. 現地調査, 集團研究, 數量化, 體系化的 時代에 그는 홀로 圖書館資料를 利用하며 形式的體系化에 그리 神經을 쓰지 않는다. 評者が 아는限 그는 누구의 弟者도 아니며, 弟者도 없다. 그의 方法論은 오늘날 美國社會科學界를 支配하는 行態主義, 數量的 理論의 正反對되는 것이며 그 「매너리즘」에 漸新한 矯正의 代案을 提示한다. 그는 問題를 設定하고 證據를 分析評價하여 一般的理論을 構築하는 過程에서 마치 考古學者와 같이 古土와 같은 修史學的資料를 쳐서 遺跡의 破片을 골라내어 遺失된 部分에 留意하면서 紀念碑的史證과 推論의 構成을 提示한다. 그의 獨特한 接近이 現代行態主義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대신 그것은 그 自身の 「매너리즘」에 의하여 制約되고 있다. 低俗한 數量的理論은 同類의 印象的理論보다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의 課題가 “專制와 民主主義의 社會的 根源”에서 「파노라마」와 같은 近代社會變化過程으로 擴散, 轉變하는 過程에서 다음 세가지 致命的인 變數(variable)를 놓치고 있다.

그 하나는 人口의 增加이다. 그것은 土地不足으로 因한 人口의 都市集中, 食糧確保를 위한 農業의 市場化의 가장 決定的인 要因으로서 그것없는 近代史에 관한 著述은 原物理理論을 取扱하지 않는 物理教科書와 같다. 둘째로 좀더 큰 缺點은 社會變化過程에 있어서의 理念과 社會制度의 役割을 無視한것이다.⁽²⁶⁾ 그것이 英國革命에 있어서의 淸敎主義이던, 中國革命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이던 혹은 傳統的社會에 있어서의 尊敬價値(deference)의 重要性이던 社會에 있어서의 「이데오르기」와 「유토피아」를 包含하는 社會的 神話를 無視하는것은 綜合的社會事象 分析과 그 記述에 不治의 誤謬를 內包할 可能性이 크다. 끝으로 國際的 要因을 適當할때에는 獨立變數로 設定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批判的 評價로 이 劃期的傑作的 評을 끝맺는 것은 아마도 公平하지 못할것 같다. 그것은 諸社會的 問題를 憲政秩序의 테두리 안에서 合理的으로 解決하는 政治的 組織과 그 自由와 民主主義의 理念을 自背하여 하지 않으며 “後進”社會의 Strum und Drang에 世俗哲學者的 慨嘆을 不禁하면서 그들을 “近代化”시키고 나서는 西歐와 北「아메리카」文明圈에게 收奪, 革命, 內戰과 戰爭의 連續인 그울챙이 時代를 想起시킨다. 또 그것은 西洋文明의 그 “不滅의 屋氣樓(mirage of immortality)”⁽²⁷⁾와 物神崇拜에 呪術들린 “後進”社會의 模倣的 強迫感을 再考케 한다.

金 碩 祚 (서울法大 助教)

(25) Morris R. Cohen, *Reason and Nature: The Meaning of Scientific Method*, x(New York; 1931).

(26) 例컨데 하나의 政治組織의 「이데오르기」 또는 價値觀이 神聖 窮極的(sacred-consummatory)이나 世俗 手段的(secular-instrumental)이냐에 따라 그 近代化의 類型이 달라진다. Dorr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22 (Chicago: 1965).

(27)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 VII, *Universal States*, op. cit., 7-45.